

建築審議와 建築士業務

尹 鳳 源

1. 건축심의의 목적
2. 건축심의의 한계
3. 건축심의의 필요성
4. 현재 건축심의의 실태
5. 건축사의 업무
6. 건축사 업무의 중요성
7. 바람직한 건축심의의 방향

1. 건축심의의 목적

각지방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심의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각지방 각지역에서의 건축심의의 목적은 그지방 그도시의 기능과 미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제조건을 구비하여 심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코저 함에 있다고 본다. 보다 아름답고 보다 기능적인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하겠다. 특히 건축행정면과 지방마다의 특색있는 기능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건축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다고 본다.더 생각해보다면 설계자인 건축사 각자가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한것이 아닌가 한다. 올바른 건축문화로 구현하기위한 수단이라고도 보여진다.

2. 건축심의의 한계

극히 객관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심의를 해야하겠고 건축설계자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가 끝나야 되리라 본다. 심의기준을 벗어나서 개인 설계자의 특성까지를 범하면서 심의가 깊어질수 없으며 특히 제작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짧은 시간내에 여러 건축사들의 작품을 제작면까지 볼수도 없고 또 침해해서도 안되겠다. 설계자인 건축가를 돕고 지방실정과 앞날의 건축문화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시안적이고 원대한 계획에 과녁을 맞추어 나가야 하겠다. 심의위원회의 하는일이 건축사들을 돕고 자문하는 일에 끝나야 하겠고 지시나 지도를 하는 위치에 군림해서는 문제가 되리라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설계자는 설계를 위하여 건축주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화 했을것이고 그소제에 의하여 많은 시간연구와 창의력을 경주하였을것은 명백하다. 필요한 작품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예술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준비했을것으로 보는데 자칫잘못 생각하여 일시적으로 느낀대로 제작에 침해를 가져온다면 보통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심의의 한계도 제작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라야 하겠다.

3. 건축심의의 필요성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또는 규칙조례 외에도 특별법 등이 수시로 변경하는 건축행정의 질서문제가 크게 다루어져야 하는 세월이고 보면 개인 건축사가 변화하는 법을 다알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리라 본다. 그러기에 건축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각지방의 특수성과 맞추어가기 위하여 지방건축행정법을 전달하고 시행키위하여 중요하다고 본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법만을 다룰수도 없다고 본다면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법전체적인 자문을 구하여 정부시책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하기 위함이다.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시행해야하는 과정에서 너무 법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니 이를 속히 전달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없도록 사전심의함에 필요성을 느낀다.

4. 현재 건축심의의 실태

과거보다는 많은 개선과 발전을 했을것으로 본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 심의위원회의 개편을 들수있겠다.전공분야별로 생각을 했다던가 또는 관직의 위원을 줄이고 순수한 학계에서 중원을시도 했다던가 하는점은 많은 개선을 한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도 심의위원회 직권으로 건축사들의 작품을 재심의하는 명목으로 지시 감독하고 창작품에 깊이 줄을긋고 짜르고 붙이고하는 심의가 아직도 계승되고 있는 실태이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설령 부족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피차에 입장을 살려가면서 업무수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작품심의 시간이 바쁠때는 2~3분정도 길어야 몇분 되고있지 않은가. 심의위원들이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해도 정도문제가 아닐까싶다. 몇주 몇개월에 걸쳐 연구하고 엮은 작품들을 누구도 몇분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칼질을 한다는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심한경우는 10여회의 재심의 경우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니 문제가 되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심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도 지켜지지 않

고 있으며 기본법마저 뭉개지고 있는일이 허다하니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대지면적에 최소한이라던가 일조권이 라던가 대지안에 공지법이라던가 전폐율 등 기본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건축사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같은 서울시내의 경우도 구청별로 심의기준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니 왜 이렇게 어지럽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일까? 어떤법이 우선인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심의위원회는 기본법도 없이 생각나는대로 개인의 생각대로 이끌어야 하는가 그대로 괜찮은가? 다행히 몇번에 재심에서 통과를 보았다고 하자. 다음관문인 허가를 책임도 못지면서 통과한 작품이 허다하다. 심의는 무엇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방향은 행정적인 심의가 아니고 제작품에 깊이 손을 대고 있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설계의 수준은 심의위원들에게 무더기로 넘겨져야 할 업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종합예술업무라고 자칭하는 건축설계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각자의 개성 작품 등 단정키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그리 쉽게 손을 댈수 있는지?

5. 건축사의 업무

우수한 건축을 위하여 설계하고 설계된 작품을 잘 지어 되도록 감리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업무를 맡은 것이 건축사 본연의 업무요 책임이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전체 설계를 책임지고 있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추궁도 당한다. 기능적이요 예술적이요 경제적인 우수한 건축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건축사 업무가 아닌가? 짜르고 붙이고한 심의를 거쳐 지은집이 잘못되었을 때 심의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에 부담도 지겠는가? 현재실정으로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왜 건축사의 업무를 깊이 관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로 미루어 건축사 업무에 책임한계 범위를 관여할 수가 있는지? 건축주중에는 건축사의 업무가 건축허가에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행정가도 때로는 건축사에게 허가 책임을 지울려는 물지각한자도 있는 듯하다. 설계는 건축사가 허가하는 건축주가 허가권자는 행정가들이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6. 건축사업무의 중요성

건축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역군으로써 어떤 환경이라도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

겠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잘못하여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지 않는가? 한사람의 의사가 잘못했을 때는 1명의 인명이 죽어 가지만 한사람의 건축사가 잘못했을 때는 수많은 인명피해도 낼수 있듯이 무서운 결과를 직시하고 책임을 져야 하겠다. 과거에 건물을보고 보기싫은 점을 발견했을 때 후손대대로 욕을하지 않는가? 서예가나 화가가 만든 작품은 개인이 소장하지만 건축물이란 창작품은 온천하에 공개되어 있기에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관에 개입이 어떻고 건축주가 어떻게 잔소리했으며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건축가의 양심에 호소해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설계를 해야 하겠다. 일시적인 오관이나 게으름이 다가오는 몇세기를 두고 욕거리로 남는다면 어찌 소홀히 다룰수가 있겠는가? 최선을 다했어도 미흡한 점이 하나둘이 아닐진데 그렇지 못해서 과오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차라리 포기하는편이 현명하리라 본다.

7. 바람직한 건축심의의 방향

과도기적인 위치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되어 지기를 바란다. 현재위치에서 건축심의의 방향은 건축행정심의에 머물러 주었으면 싶다. 건축행정은 다분히 복잡하고 또 지도를 받아야 할 분야가 있다고 보기에 그러하다. 건축가가 일일이 법만을 다룰수가 없기에 자문을 받는다고 보면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심의기준 또한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모법에 정신은 모법에 정신대로 맞추어서 시행해야 하겠고 심의기준이 선다고 해도 모순되며 속히 시정해야 하겠으며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어떤 개인의 의사가 전체의 사인양 지켜지는 것은 큰모순을 낳는 것이다.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심의에서 바람이 있다면 우선 심의위원구성에서부터 검토 되어야 하겠다. 대학교수라고 건축술에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니만큼 전공분야 별로 구성되어 어느 한분야도 소홀함없이 자문해야 하리라 믿는다. 심의위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각지방 행정과 실정을 잘알아서 적합하게 심의가 되어야 하겠고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심의기준은

원시안적이고 전문적이며 세월이 흘러서 후세에 까지도 부끄러움이 없을 건축문화를 이룩하기에 부족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하겠다. 법에 변화가 없이 안정기에 들어선다면 심의라는 거주장스럽고 불편한 제도는 점차 없어져야 하겠다. 책임지는 건축사가 건축작품을 구사하는 시기가 와야 하리라 본다.

建築研究所 源建社